

의안번호	2202156
의 퇴 인	서삼석의원
회 답 일	2024. 8. 21.
추계번호	24B226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3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제3호 ※ ‘어업재해’의 정의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함하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재해의 복구비 지원 등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의무규정
2	안 제4조제1항 (보조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u>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u> ,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현행법은 타 법령에서 보상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금보다 타 법령에서의 실수령액이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제3호(정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제1항(보조 및 지원)		

2. 상세 사유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예산을 편성·집행중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표 1] 농어업재해대책 개요

	농업재해대책	어업재해대책
정의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목적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지원 근거	법 제4조(보조 및 지원)	
지원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국가관리(국비 100%), 지방관리(국 50%, 지방 50%), 농어촌공사 관리(국 70%, 지방 30%)	- 직접 지원 - 어선·어망·어구(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증·양식시설복구비, 수산생물 등의 입식, 생계지원비 - 간접 지원 - 영여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 특별융자

	농업재해대책	어업재해대책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융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단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9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17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래 시점의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및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예측이 곤란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며, 해마다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¹⁾

※ [참고자료 2]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2019~2023년 참고

[표 2] 농어업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사업명	재해대책비 (1033-302)	재해대책비(융자) ¹⁾ (1033-304)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2019	예산	557,64	28,500	10,000
	결산	68,860	6,187	10,842
2020	예산	60,188	8,500	7,500
	결산	133,634	851	8,286
2021	예산	100,000	28,500	8,000
	결산	145,604	1,252	6,150
2022	예산	150,000	8,500	8,000
	결산	65,039	5,893	7,973
2023	예산	200,000	—	8,000
	결산	170,023		16,909
2024	예산	280,000	—	50,000

주: 1) 2023년부터 재해대책비(융자)에서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사업으로 전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각 연도)

1)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비비 활용 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

-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정의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타법령에 의한 실수령액이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등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을 허용함²⁾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3.12.14.)
 - ※ [참고자료 3] 유해야생동물 지정 현황 및 관리(포획) 체계, [참고자료 4] 민물가마우지 피해 현황 및 대책 참고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어가피해는 다음과 같음
 - ※ 참고로 현행법상 농업재해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됨³⁾

-
- 2) 환경부에 따르면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주요 피해로는 내수면 어업(양식장, 낚시터 포함) 등 영업 피해와 집단번식에 따른 수목 고사(백화현상)가 있음. 특히 내수면 어업 피해는 어족자원 고갈, 어구(자망 등) 손상, 고급 어종(쏘가리 등)에 상처를 내는 등 상품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음
- 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시·군별 10ha 이상인 경우 복구비(국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국고 지원내역은 없음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유해야생동물(「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표 3]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어가피해 현황

연도	야생동물	피해어가수	피해내역
2019	민물가마우지, 수달, 왜가리 등	23개 어가	• 향어 1개 어가 36,500마리 • 송어 19개 어가 32,240마리 • 메기 3개 어가 124,000마리
2020	민물가마우지, 수달, 왜가리, 어치 등	26개 어가	• 송어 21개 어가 24,020마리 • 붕어 2개 어가 800마리 • 메기 3개 어가 124,000마리
2021	민물가마우지, 수달, 왜가리, 어치 등	27개 어가	• 송어 21개 어가 24,020마리 • 붕어 2개 어가 800마리 • 메기 3개 어가 124,000마리 • 우렁이 1개 어가 450kg
2022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수달, 청둥오리 등	33개 어가	• 송어 22개 어가 85,870마리 • 붕어 4개 어가 50,800마리 • 메기, 동자개 4개 어가 130,800마리 • 향어 1개 어가 2,500마리 • 잉어 1개 어가 500마리
2023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수달, 흑부리오리 등	93개 어가	• 김 54개 어가 34,254책 • 송어 17개 어가 106,720마리 • 메기 15개 어가 224,122마리 • 붕어 1개 어가 50,000마리 • 잉어 2개 어가 50,500마리 • 향어 1개 어가 2,500마리 • 흰다리새우 1개 어가 10,000마리 • 우렁이 1개 어가 1,000kg

주: 1. 피해량 산출은 어민 피해신고 기준
 2.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동물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정의—어업재해의 정의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포함(안 제2조제3호),
 보조 및 지원(안 제4조제1항)

□ 개정안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양식업 등 어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타 법령에서 보상금·지원금의 실수령액이 현행법에 따른 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 대해 차액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재해 피해 어가 수 및 어가별 피해액, 유형별 농어업재해 중 차액지원 대상 농어가 수 및 그 금액, 지원 비율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피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발생여부 및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관련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임
 - 참고로 농업재해대책 비용의 경우 2006~2023년 기간 중 집행액은 최저 91억원('15년)에서 최고 2,460억원('06년)으로서, 자연재난에 대한 추가예산소요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농림축산식품부)⁴⁾

4) 농업재해대책비 집행액: ('06) 2,460억원 → ('08) 251 → ('10) 665 → ('12) 1,973 → ('14) 144 → ('15) 91 → ('18) 1,234 → ('19) 689 → ('20) 1,336 → ('21) 1,456 → ('22) 650 → ('23) 1,700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농업재해대책

□ 목적

-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주요 항목 복구비 부담률 >

(단위: %)

항목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농약대	70	30	—	—
대파대	35	15	30	20
가축입식	35	15	30	20
농림시설	24.5	10.5	55	10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 국가관리(국비100%), 지방관리(국50, 지방50), 농어촌공사 관리(국70, 지방30)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 피해율 30~49%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용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 고정금리 1.8%(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2. 어업재해대책

□ 목적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어선·어망·어구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 톤수
		융자 70 (40톤이상 어선)	지원액 = 건조지원 기준 지수
	증·양식시설복구비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x 피해시설량
	수산생물 등의 입식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수량
	생계지원비	보조 100	1인가구 623,300원~6인가구 2,168,300원, 7인이상 1명 증가시 263,800원 추가 피해단위 피해율 50%
간접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1년	어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재해대책 특별융자	융자 100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참고

[참고자료 2]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2019~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 (1.24.~28.)	제주지역 한파로 월동채소 등 언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55호	■ 농작물 4,704ha * 월동무 3,510, 양배추 291, 브로콜리 270, 콜라비 122, 등 ■ 가축폐사 1,501마리*, 꿀벌 5,129군 * 닭 1,500마리, 말 1마리	■ 13,552백만원 - 보조 12,287(국비 8,601) - 융자 759 - 자부담 506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13
대설 (2.9.~10.)	경남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과 수시설 파손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1호	■ 농업시설 30ha * 비닐하우스 1, 인삼시설 1.2, 과수시설 28 등 ■ 농작물 5.4ha * 복숭아 2.5, 블루베리 2.3, 체리 0.3, 딸기 0.2 등	■ 822백만원 - 보조 307(국비 215) - 융자 428 - 자부담 87 * 정책자금 상환연기: 62
이상저온 (3~4월)	4월 냉해로 14개 시·도(경북, 전 남, 충북, 전북, 충남, 경남, 경 기, 강원, 세종, 울산, 대구, 대 전, 광주, 부산) 139개 시·군·구 과수 꽃눈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6,652호	■ 농작물 44,765ha * 과수 37,864ha, 채소류 4,910, 수실류 1,991 등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 120,810백만원 - 보조 120,682(국비 75,644) - 융자 77 / 자부담 51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688
호우·강풍 (5.4~6. 및 5.28~30)	호우·강풍으로 5개 시·도(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서 농 작물 침수, 도복, 앞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8,119호	■ 농작물 8,057ha * 맥류 5,238, 전작 1,884, 채소 637, 과수 93 등 ■ 꿀벌 7군 ■ 농경지 0.9ha	■ 10,552백만원 - 보조 9,088(국비 6,317) - 융자 881 - 자부담 583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82
우박·강풍 (6.8~15)	7개 도(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전남)에서 우박·호 우·강풍으로 사과 흠집,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9,460호	■ 농작물 5,150ha * 과수 3,7812, 전작 242., 채소 698, 특작·화훼 196 등 ■ 농업시설 1.5ha * 비닐하우스 0.2, 인삼시설 1.2, 축산 0.1 등 ■ 농경지 0.3ha	■ 16,897백만원 - 보조 15,515(국비 10,480) - 융자 856 - 자부담 526 * 정책자금 상환연기 13,896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6.27~7.27) 및 태풍 카눈	16개 시·도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가축 폐사, 비닐하우스, 수리시설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7,078호	■ 농작물 71,416ha * 벼 37,317, 콩 14,661, 채소류 7,752, 과수 4,501 등 ■ 농업시설 269ha * 비닐하우스 92, 양액시설 72, 과수시설 68, 인삼시설 31, 축산시설 5 등 ■ 가축폐사 913천마리*, 꿀벌 13천군, 기타 곤충 43천kg * 닭 852,808마리, 소 826, 돼지 3,867 등 ■ 농경지 1,490ha ■ 공공시설 689개소	<중대본 심의> ■ 341,972백만원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우리부 지원> - 보조(위로금) 73,947(국비 49,887)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융자 14,374, 자부담 7,527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9,110
호우 (9.15~17, 9.20~21) 및 우박 (10.14, 26)	7개 도(경남,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충북, 강원)에서 호우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흠집, 벼 도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2,986호	■ 농작물 6,697ha * 단감 2,404, 사과 2,218, 벼 1,187, 채소류 673 등 ■ 농업시설 0.1ha ■ 농경지 1.5ha	■ 17,940백만원 - 보조 17,170(국비 12,019) - 융자 469 - 자부담 301 * 정책자금 상환연기 3,190
우박 (11.17)	제주에 우박이 내려 감귤 낙과·흠집, 쪽파 꺾임 피해 * 피해 농가수: 145호	■ 농작물 43.9ha * 감귤 42.4, 쪽파 1.5	■ 140백만원 - 보조 140(국비 98)
대설·한파 (12.20~22)	대설·한파로 인한 4개도(전남, 전북, 제주, 충남) 양파, 대파, 무 등 농작물 언피해 및 농업시설 파손 * 피해 농가수: 2,189호	■ 농작물 972.6ha * 양파 597.2, 대파 272.9, 무 70.2 등 ■ 농업시설 22.8ha * 비닐하우스 20.5, 축산시설 1.9, 과수시설 0.4	■ 6,820백만원 - 보조 4,135(국비 2,895) - 융자 2,231 - 자부담 454 * 정책자금 상환연기 9,801
합 계		■ 농작물 141,810.9ha ■ 농업시설 323.4ha ■ 가축폐사 914.5천마리, 꿀벌 18천군, 기타곤충 43천kg ■ 농경지 1,492.7ha ■ 공공시설 689개소 * 피해 농가수: 229,785호	<합계: 529,505백만원> · (중대본) : 138,460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 (농식품부) : 391,045 - 보조(사유): 253,271(국비 166,156)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융자 : 20,075 / 자부담 : 10,035 * 정책자금 상환연기: 176,442

○ 2022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강풍 (3.25.~26.)	전남 보성(호우), 제주 제주·서귀포(강풍)으로 농작물 침수, 도복, 잎·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1호	■ 농작물 260ha * 보리 98.5, 밀 23.8, 옥수수 94.6, 단호박 42.6, 수박 0.2	■ 377백만원 - 보조 351(국비 246) - 용자 16 - 자부담 1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5.24.)	경북 6개(안동, 청송, 영양 등) 지역 우박으로 사과 흠집, 고추 잎 파열 등 노지작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79호	■ 농작물 819ha * 과수 754, 채소 63, 전작 2, 특작 0.7 · 사과 722, 고추 42, 자두 16, 배추 13 등	■ 2,403백만원 - 보조 2,403(국비 1,6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5,207
우박 (6.24.~25.)	경북 봉화지역 우박으로 사과 흠집·낙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18호	■ 농작물 163ha * 과수 160.4, 채소 2.6 · 사과 158.3, 블루베리 1.3 등	■ 457백만원 - 보조 457(국비 320) * 영농자금 상환연기 23
호우 (6.28.~7.1.)	경기·강원·충남 지역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413호	■ 농작물 918ha * 벼 476.8, 전작 307.3, 채소 78.5, 과수 19.8, 특작 31.8, 기타 3.8 ■ 농경지 32.7ha ■ 농업시설 0.5ha	■ 3,208백만원 - 보조 2,099(국비 1,469) - 용자 742 - 자부담 367 * 영농자금 상환연기 50
가뭄 (6~7월)	전남(무안·영광·진도·신안) 지역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고사, 시들음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692호	■ 농작물 1,442ha * 벼 1,429(영광 171, 진도 21, 신안 1,238), 콩 12(무안), 고구마 1(무안)	■ 1,318백만원 - 보조 1,231(국비 862) - 용자 52 - 자부담 35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태풍 ‘송다’ (7.30.~8.1.)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전남 순천, 보성 지역 농작물 낙과, 도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66호	■ 농작물 123ha * 벼 19, 과수 100(배 97, 복숭아 2 등), 특작 4	■ 316백만원 - 보조 308(국비 216) - 용자 5 - 자부담 3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호우 (8.8.~17.)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175호	■ 농작물 4,219ha * 벼 1,327, 과수 817, 전작 306, 채소 1,278, 특작 428, 기타 63 ■ 농경지 410ha ■ 농업시설 22ha ■ 가축폐사 33,910마리, 꿀벌 3,366군 ■ 수리시설 57개소	<중대본 심의> ■ 49,546백만원 - 보조(사유) 21,287(국고 13,808)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2,065(국고6,463) - 용자 8,604, - 자부담 7,590 * 영농자금 상환연기 8,472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 (8.19.~20.)	충북 충주, 음성에 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낙과, 농경지 유 실·매몰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585호	■ 농작물 76ha * 벼 4, 전작 3, 채소 2, 과수 57(복숭아 56 등), 특작 10 ■ 농경지 4ha ■ 농업시설 0.1ha	■ 419백만원 - 보조 333(국비 233) - 융자 62 - 자부담 24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제11호 태풍 (힌남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도복, 벼 흑·백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7,502호	■ 농작물 49,105ha * 벼 29,000, 과수 7,514, 전작 4,768, 채소 7,402, 특작 285, 기타 136 ■ 농경지 331ha ■ 농업시설 45ha ■ 가축폐사 12,793마리, 꿀벌 4,587군 ■ 수리시설 22개소	<중대본 심의> ■ 132,836백만원 - 보조(사유) 77,972(국고 41,395)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44,377(국고 30,350) - 융자 7,571, - 자부담 2,916 * 영농자금 상환연기 12,688
대설·한파·강풍 (12.21.~24.)	전라지역 중심 대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위주로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350호	■ 농작물 52.4ha * 과수 12, 채소 27, 특작 7 등 ■ 농업시설 105.4ha * 비닐하우스 67, 인삼시설 23, 축산시설 9, 과수시설 6 등 ■ 가축폐사 13,729마리, 꿀벌 3,893군	<중대본 심의> ■ 14,671백만원 - 보조(사유) 4,810(국고 2,790) <우리부 지원> - 융자 8,231 - 자부담 1,630
합 계		■ 농작물 57,177ha ■ 농업시설 173ha ■ 농경지 778ha ■ 가축폐사 60,432마리, 꿀벌 11,846군 ■ 수리시설 79개소 * 피해 농가수: 64,581호	<합계: 205,551백만원> · (중대본): 104,069 - 보조(사유): 104,069(국비 57,993) · (농식품부): 101,482 - 보조(사유): 7,182(국비 5,028) - 보조(공공): 56,442(국고 36,813) - 융자: 25,283 / 자부담: 12,575 * 영농자금 상환연기: 26,440

○ 2021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1차) (1.8.~1.10.)	4개 시·도(광주·전북·전남·제주) 한파로 시설작물, 월동채소 등 연피해 발생 * 피해 증상이 바로 확인되는 배추, 무 등 월동채소 중심 * 피해 농가수: 6,813호	■ 농작물 8,886ha * 채소 8,116, 전작 553, 특작 125 등 ■ 가축 98마리, 꿀벌 363군 * 염소 90, 송아지 4, 말 4	■ 22,299백만원 - 보조 21,258(국비 14,869) - 융자 652 - 자부담 389 * 영농자금 상환연기 3,960
대설 (3.1.~3.2.)	강원지역 대설로 15개 시군 농업시설물, 농작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213호	■ 농업시설 114ha * 비닐하우스 57, 인삼시설 42, 과수시설 13 등 ■ 농작물 8ha ■ 꿀벌 493군, 염소1마리	■ 11,260백만원 - 보조 4,044(국비 2,831) - 융자 6,094 - 자부담 1,122 * 영농자금 상환연기 10
한파(2차) (1.8.~1.10.)	6개 시·도(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 과수 갈변·고사, 밭작물 고사 등 연피해 발생 * 피해 증상이 4월 이후에 확인된 과수, 마늘·양파 등 밭작물 등 * 피해 농가수: 7,844호	■ 농작물 3,481ha * 과수 2,645, 채소 520, 특작 308, 기타 8	■ 12,218백만원 - 보조 11,936(국비 8,355) - 융자 169 - 자부담 113 * 영농자금 상환연기 8,761
이상저온 (4월)	9개 시·도(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과수 꽃눈 고사 등 * 피해 농가수: 42,933호	■ 농작물 27,716ha * 과수 26,057, 맥류 895, 전작 101, 채소 106, 특작 424, 기타 133	■ 78,050백만원 - 보조 77,867(국비 54,507) - 융자 110 - 자부담 73 * 영농자금 상환연기 24,003
마늘쫘 2차분화 (5월)	1월 하순~3월 고온과 4~5월 잦은비로 3개 시·도(충북, 충남, 경북) 한지형 마늘 벌마늘 피해 * 피해 농가수: 1,338호	■ 마늘 400ha(충북 63, 충남 229, 경북 108)	■ 1,175백만원 - 보조 1,175(국비 822)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집중호우 (7.5.~8.)	4개 시·도(충남·전북·전남·경남) 농작물 침수, 농업시설물 등 피해(전남 피해가 대부분) * 피해 농가수: 12,927호	■ 농작물 27,661ha ■ 농경지 111ha ■ 농업시설 11ha ■ 가축폐사 108천수, 꿀벌 806군 ■ 수리시설 146개소	<중대본 심의> ■ 30,943백만원 - 보조(사유) 26,275(국고 17,654)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809(국고1,245) - 융자 2,084, - 자부담 775 * 영농자금 상환연기 2,117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우박 (6.22, 7.10, 7.15, 7.17.)	6개 시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과실 흠집, 잎·줄기 파열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223호	■ 농작물 987ha * 과수 687, 전작 64, 채소 150, 특작 86	■ 2,953백만원 - 보조 2,746(국비 1,922) - 융자 124, - 자부담 83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폭염 (7~8월)	5개 시도(경기·충북·충남·대전·세종) 과수 일소피해, 인삼 잎마름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102호	■ 농작물 1,546ha * 과수 263, 전작 11, 채소 68, 특작 1,202, 기타 2 ■ 가축폐사 3천수(육계)	■ 6,103백만원 - 보조 5,898(국비 4,129) - 융자 123 - 자부담 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85
우박 (8.18.)	전남(영암·함평) 지역 우박으로 벼 낱알 떨어짐, 노지작물 잎 손상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29호	■ 농작물 211ha * 벼 114.4, 과수 31.1(배 19.3, 단감 11.5, 블루베리 0.3), 전작 65.3(고구마 64.7, 콩 0.6)	■ 234백만원 - 보조 234(국비 164) * 영농자금 상환연기 280
태풍 ‘오마이ς’ (8.21.~25.)	5개 시도(충남·전북·경북·경남·부산) 벼 흡수,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3,071호	■ 농작물 7,595ha * 벼 7,118, 과수 233, 전작 37, 채소 186, 특작 8, 기타 13) ■ 농경지 60ha ■ 농업시설 5ha ■ 팔벌 844군 ■ 수리시설 24개소	<중대본 심의> ■ 8,546백만원 - 보조(사유) 7,247(국고 3,98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73(국고87) - 융자 791 - 자부담 335 * 영농자금 상환연기 98
집중호우 (8.31.~9.1.)	충남 지역 벼 침수, 고추·콩 등 노지작물 침수 피해 * 피해 농가수: 532호	■ 농작물 188ha * 벼 63, 전작 27, 채소 76, 과수 6, 특작 12, 기타 4 ■ 농경지 19ha ■ 농업시설 0.1ha ■ 팔벌 80군	■ 1,253백만원 - 보조 825(국비 578) - 융자 286 - 자부담 142 * 영농자금 상환연기 358
태풍 ‘찬투’ (9.14.~17.)	제주 지역 월동무, 양배추 등 노지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5,117호	■ 농작물 9,633ha * 전작 3,475, 채소 5,998, 특작 129, 과수 25, 밭벼 6 ■ 농경지 0.6ha	■ 21,092백만원 - 보조 18,983(국비 13,288) - 융자 1,267, - 자부담 842 * 영농자금 상환연기 359
우박·강풍 (9.22.)	전북(정읍, 부안), 전남(담양), 경북(안동) 지역 벼 도복·낱알 떨어짐, 과수 흠집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633호	■ 농작물 543ha * 벼 423, 과수 107, 전작 9, 채소 4	■ 671백만원 - 보조 666(국비 466) - 융자 3, - 자부담 2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벼 이삭도열병 (’21.8~9월)	’21년 8~9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현상, 일조부족 등 기 상요인으로 전북지역 벼 병해 피해 * 피해 농가수: 20,067호	■ 벼 40,425ha	■ 33,140백만원 － 보조 33,140(국비 23,198) － 융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강풍 (10.1.)	경기, 충북, 충남 지역 과수 낙 과 및 타박·파열, 벼 도복·탈립, 채소 잎·열매 파열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254호	■ 농작물 2,416ha * 벼 1,832, 과수 433, 채소 118, 전작 17, 특작 15, 기 타 1 ■ 농업시설 6.5ha	■ 3,665백만원 － 보조 3,346(국비 2,342) － 융자 225 － 자부담 94 * 영농자금 상환연기 921
한파 (10.16.~18.)	전북 진안지역 배추 결구불량, 무게 감소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333호	■ 농작물(배추) 90.3ha	■ 250백만원 － 보조 250(국비 175) － 융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11.10.)	전남 영광지역 대파 잎이 부러 지거나 상처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59호	■ 농작물(대파) 291.8ha	■ 764백만원 － 보조 764(국비 535) － 융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합 계		■ 농작물 132,078ha ■ 농업시설 136.5ha ■ 농경지 190.6ha ■ 가축폐사 111천수, 양봉 2,586군 ■ 수리시설 170개소 * 피해 농가수: 109,788호	<합계: 234,616백만원> · (중대본): 33,522 － 보조(사유): 33,522(국비 21,634) · (농식품부): 201,094 － 보조(사유): 183,132(국비 128,181) － 보조(공공): 1,982(국고1,332) － 융자: 11,928 / 자부담: 4,052 * 영농자금 상환연기: 40,952

○ 2020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이상저온 (4월)	13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 작물 정식기 저온 피해 * 피해 농가수: 74,204호	■ 농작물 43,554ha * 과수 37,111, 맥류 2,950, 전작 1,820, 채소 1,106, 특 작 445, 기타 122	■ 98,634백만원 - 보조 98,049(국비 68,645) - 융자 351(351) - 자부담 234 * 영농자금 상환연기: 32,385
마늘인편 2차분화 (5월)	겨울철 고온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남도종 마늘의 인편 2차분화(벌마늘) 피해 * 피해 농가수: 1,970호	■ 마늘 644ha	■ 1,586백만원 - 보조 1,586(국비 1,110) - 융자·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5.29.~6.6.)	5.29일 경북, 6.6일 전북·전남·경남 내륙·산간지역 사과, 고추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77호	■ 농작물 1,273ha * 과수 1,020, 채소 211, 전작 26, 특작 16	■ 2,941백만원 - 보조 2,941(국비 2,059) - 융자·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집중호우 (7.28.~ 8.11)	집중호우 영향으로 전국적 농작물 침수, 가축폐사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7,767호	■ 농작물 34,175ha ■ 유실·매몰 2,937ha ■ 시설물 237ha ■ 가축폐사: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꿀벌 26천군 등 ■ 수리시설 958개소	<중대본 심의> ■ 325,532백만원 - 보조(사유) 127,200(국고 85,50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75,601(국고 92,803) - 융자 (56,677) - 자부담 22,731 * 영농자금 상환연기: 39,987
태풍 ‘바비’ (8.26~8.27)	전남, 제주 중심으로 7개 시도 농작물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645호	■ 농작물 8,902ha ■ 유실·매몰 4.6ha ■ 시설물 12ha ■ 가축폐사: 돼지 70, 오리 2,000마리, 꿀벌 211군	■ 9,572백만원 - 보조 9,416(국고 6,592) - 융자 0(429) - 자부담 156
태풍 ‘마이삭’, ‘하이선’ (9.2~.3, 9.6~7)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 16개 시도 농작물 낙과, 도복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1,436호	■ 농작물 115,028ha ■ 유실·매몰 185ha ■ 시설물 177ha ■ 가축폐사: 한우14마리, 돼지1,530, 가금류 11천수, 꿀벌 6천군 등 ■ 수리시설 193개소	<중대본 심의> ■ 140,206백만원 - 보조(사유) 130,900(국고 72,50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4,573(국고2,426) - 융자 500(11,679) - 자부담 4,233 * 영농자금 상환연기(3개태풍): 21,730
합 계		■ 농작물: 203,576ha ■ 유실·매몰: 3,126ha ■ 농림시설: 426ha ■ 가축폐사: 1,930천마리, 꿀벌 32천군 ■ 공공(수리)시설: 1,151개소 * 피해 농가수: 271,499호	<합계: 578,471백만원> · (중대본): 258,100 - 보조(사유): 258,100(국비158,000) · (농식품부): 320,371 - 보조(사유): 111,992(국비78,406) - 보조(공공): 180,174(국비95,229) - 융자: 851(69,136) / 자부담: 27,354 * 영농자금 상환연기: 94,102

○ 2019년

－ 자연재난(13건)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국비 복구지원액
이상저온 (3~4월)	7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작물 정식기 저온 피해 * 피해 농가수: 11,089호	■ 농작물 7,378ha * 과수 6,553, 전작 482, 특작 195, 채소 148	■ 12,508백만원 － 보조 12,254, 융자 254 * 영농자금 상환연기: 14,607
대 설 (4.9~10.)	강원·경북 대설(10~25cm)로 인삼재배시설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61호	■ 농작물 3ha ■ 농업시설 41.4ha ■ 축산시설 0.6ha	■ 1,193백만원 － 보조 389, 융자 804 * 영농자금 상환연기: 3
서리·저온 (5.7.~9.)	강원·충북·전북·경북 내륙·산간지역 사과 꽃눈, 고추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9,464호	■ 농작물 7,211ha * 과수 6,930, 채소 189, 전작 9, 특작 등 83	■ 12,216백만원 － 보조 12,216, (융자 339) * 영농자금 상환연기: 4,669
우 박 (5.14.)	경북·경남에 직경 1cm 내외의 우박이 내려 마늘·양파 위주 피해 * 피해 농가수: 237호	■ 농작물 220ha * 채소 194, 전작 22, 과수 4	■ 354백만원 － 보조 331, 융자 23 * 영농자금 상환연기: 121
호우·강풍 (5.17~19.)	전남·제주에 호우·강풍으로 감자·맥류 등 노지작물 피해 * 피해 농가수: 229호	■ 농작물 637ha * 전작 312, 특작 186, 맥류 85, 채소 등 54	■ 1,158백만원 － 보조 766, 융자 392
고 온 (5월 상순)	전남 지역 대서풍 마늘 인편 투명화·무름 피해 * 피해 농가수: 1,595호	■ 마늘 679ha	■ 1,174백만원 － 보조 1,174
우 박 (6.15.)	충북·경북에 직경 0.2~2cm의 우박이 내려 사과 과실 타박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022호	■ 농작물 1,588ha * 과수 1,426, 채소 123, 전작 19, 특작 등 20	■ 2,479백만원 － 보조 2,479, (융자 2) * 영농자금 상환연기: 992
태풍‘다나스’ (7.18.~20.)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882호	■ 농작물 3,443ha ■ 농업시설 0.6ha	■ 2,720백만원 － 보조 2,720, (융자 643) * 영농자금 상환연기: 464
호 우 (7.24.~28.)	전국 호우로 충청, 전북 농작물 등 침수 피해 * 피해 농가수: 672호	■ 농작물 408ha ■ 꿀벌 130군	■ 660백만원 － 보조 660, (융자 379) * 영농자금 상환연기: 96
태풍‘링링’ (9.6.~7.)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전국적으로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8,015호	■ 농작물 29,056ha ■ 농업시설 141ha ■ 가축폐사 25천수, 꿀벌 1,792군	<중대본 심의> ■ 80,400백만원 － 보조 80,400, (융자 12,869) * 영농자금 상환연기: 10,739
호 우 (8.27.~9.1)	가을장마로 인한 제주지역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54호	■ 농작물 2,190ha	■ 2,293백만원 － 보조 2,293, (융자 364) * 영농자금 상환연기: 443
태풍‘타파’ (9.21.~23.)	제17호 태풍 타파로 전라, 경상, 제주 지역 중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722호	■ 농작물 23,600ha ■ 농업시설 116ha ■ 가축폐사 2천수, 꿀벌 813군	■ 19,120백만원 － 보조 19,120, (융자 2,827) * 영농자금 상환연기: 10,400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국비 복구지원액
태풍‘미탁’ (10.1.~3.)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 전라, 경상, 제주 지역 중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8,786호	■ 농작물 21,509ha ■ 농경지 718ha ■ 꿀벌 12,180군 ■ 공공시설 154개소 등	<중대본 심의> ■ 30,712백만원 - 보조 30,712, (용자 9,418) * 영농자금 상환연기: 9.584
총 13건		■ 농작물 97,922ha ■ 농업시설 299ha ■ 가축 27천수, 꿀벌 15천군 등 * 피해 농가수: 145,928호	■ 166,987백만원 - 농가 보조 153,302, 용자 1,473 - 지자체(공공시설 피해) 보조 12,213 * 영농자금 상환연기: 52,158

* 국비 복구지원액중 ()내서 용자금액은 실수요를 감안, 집행유보한 금액임

－ 사회재난(1건)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지원액(국비)
동해안 산불 (4.4.~6.)	산불로 강원 5개 시군의 농기계 및 농업시설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670호	■ 농작물 19ha ■ 가축 44,231마리 ■ 농업시설 3.5ha ■ 농기계 755대 ■ 공공시설 7개소	■ 6,960백만원 - 보조 2,246, 용자 4,714 * 영농자금 상환연기: 327 * 재해대책경영자금: 4,000

□ 해양수산부

○ 2023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저수온	1~3월	전남,경남	· 61어가, 4,808백만원 · 어류(돔류, 조기류) 1,925천마리	· 계: 4,044백만원 - 보조 1,769(국비 1,238) - 용자 1,365 - 자부담 910
고수온	7~9월	전남,경남, 경북	· 825어가, 43,829백만원 · 어류(조피볼락, 넙치, 강도다리 등) 31,779천마리 · 멍게 2천줄	· 계: 31,142백만원 - 보조 13,956(국비 9,782) - 용자 10,311 - 자부담 6,874
빈산소수괴	7~10월	경남	· 74어가, 1,493백만원 · 굴·홍합 2천줄	· 계: 1,473백만원 - 보조 746(국비 522) - 용자 436 - 자부담 290
합 계			■ 총 960 어가 ■ 어류 33,704천마리 ■ 굴·홍합·멍게 등 4천줄	< 합계: 36,659백만원 > - 보조: 16,471(국비 11,543) - 용자: 12,113 - 자부담: 8,075

○ 2022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이상조류	1~2월	전남	· 653어가, 647백만원 · 김 48천책, 다시마 8천줄	· 계: 631백만원 - 보조 358(국비 250) - 용자 164 - 자부담 110
강풍	3월	전남	· 413어가, 446백만원 · 김 1천책 · 미역·다시마 등 12천줄	· 계: 427백만원 - 보조 209(국비 146) - 용자 164 - 자부담 55
고수온	7~9월	전남	· 64어가, 956백만원 · 조피볼락 851천마리	· 계: 891백만원 - 보조 453(국비 317) - 용자 263 - 자부담 175
합 계			■ 총 1,130 어가 ■ 어류 851천마리 ■ 다시마·미역 등 20천줄 ■ 김 58천책	< 합계: 35,980백만원 > - 보조: 17,553(국비 12,227) - 용자: 11,028 - 자부담: 7,399

○ 2021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팽생이 모자반	1~4월	전남	· 623어가, 1,969백만원 · 김 99,237책, 다시마 9,829줄	· 계: 2,047백만원 - 보조 1,075(국비 753) - 용자 583 - 자부담 389
고수온	7~8월	경남, 전남	· 3,961어가, 34,235ha, 29,232백만원 · 어류(조개·멸치·갈치·감성돔 등) 전복 17,970천마리 · 멍게·굴·가리비·미역 등 802줄 · 새고막 1,813톤	· 계: 25,027백만원 - 보조 12,027(국비 8,366) - 용자 7,768 - 자부담 5,231
이상조류 (빈산소영양염류)	9~12월	경남	· 537어가, 9,644백만원 · 굴 11천줄	· 계: 8,905백만원 - 보조 4,450(국비 3,108) - 용자 7,768 - 자부담 5,231
합 계			■ 총 397어가 ■ 어류·전복 17,970 천마리 ■ 굴·멍게·다시마·미역·가리비 등 22천줄 ■ 새고막 1,813톤	< 합계: 35,980백만원 > - 보조: 17,553(국비 12,227) - 용자: 11,028 - 자부담: 7,399

○ 2020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강풍, 풍랑	6월	전남	· 21어가, 584백만원 · 전복 493천마리, 가두리 667칸, 관리선 6척 등	· 계: 373백만원 - 보조 170(국비 119) - 용자 146 - 자부담 58
빈산소수괴	7~8월	경남	· 271어가, 379ha, 5,549백만원 · 굴·홍합·미더덕·멍게 70천줄	· 계: 5,236백만원 - 보조 2,676(국비 1,858) - 용자 1,548 - 자부담 1,032
태풍	8월	전남	· 79어가, 1,369ha, 1,671백만원 · 어류·전복 1,697천마리 · 다시마·굴 등 841줄 · 가두리 5,128칸 등 시설	· 계: 922백만원 - 보조 437(국비 306) - 용자 329 - 자부담 156
저염분	8~9월	경남	· 26어가, 12ha, 597백만원 · 숭어 237천마리	· 계: 165백만원 - 보조 85(국비 59) - 용자 48 - 자부담 32
합 계			■ 총 397어가 ■ 어류·전복 2,427 천마리 ■ 굴·홍합·미더덕·멍게·다시마 등 71천줄 ■ 가두리 5,795칸 ■ 가두리 관리선 6척 등 시설	< 합계: 6,717백만원 > - 보조: 3,367(국비 2,342) - 용자: 2,072 - 자부담: 1,278

○ 2019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강풍, 풍랑	3월	전남	· 87어가, 980백만원 · 김2,692책, 미역1,534줄, 다사마168줄등	· 계: 666백만원 - 보조 242(국비 169) - 용자 359 - 자부담 65
고수온	7~8월	경남, 경북,부산	· 102어가, 78.6ha, 967백만원 · 어류(넙치, 조피볼락 등) 404천마리, 명게 236줄	· 계:419백만원 - 보조 212(국비 143) - 용자 124 - 자부담 83
적조	8~9월	경남, 전남	· 50어가, 42.3ha, 2,439천마리, 4,167백만원 · 넙치, 조피볼락 등 어류	· 계: 1,484백만원 - 보조 625(국비 436) - 용자 514 - 자부담 345
태풍	9월	전남	· 58어가, 3.69ha, 2,099백만원 · 조피볼락 등 어류 778천마리 · 명게 16줄, 가두리 198칸 등 시설	· 계: 2,122백만원 - 보조 959(국비 671) - 용자 819 - 자부담 344
합 계			■ 총 247어가 ■ 어류·전복 3,621 천마리 ■ 명게 252줄 ■ 김 2,692책 ■ 미역 1,534줄, 다사마168줄	< 합계: 4,692백만원 > - 보조: 2,038(국비 1,419) - 용자: 1,817 - 자부담: 837

[참고자료 3] 유해야생동물 지정 현황 및 관리(포획) 체계

(환경부 제출자료)

□ 유해야생동물 지정 현황

-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함(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뽕쇠오리, 붉은 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 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 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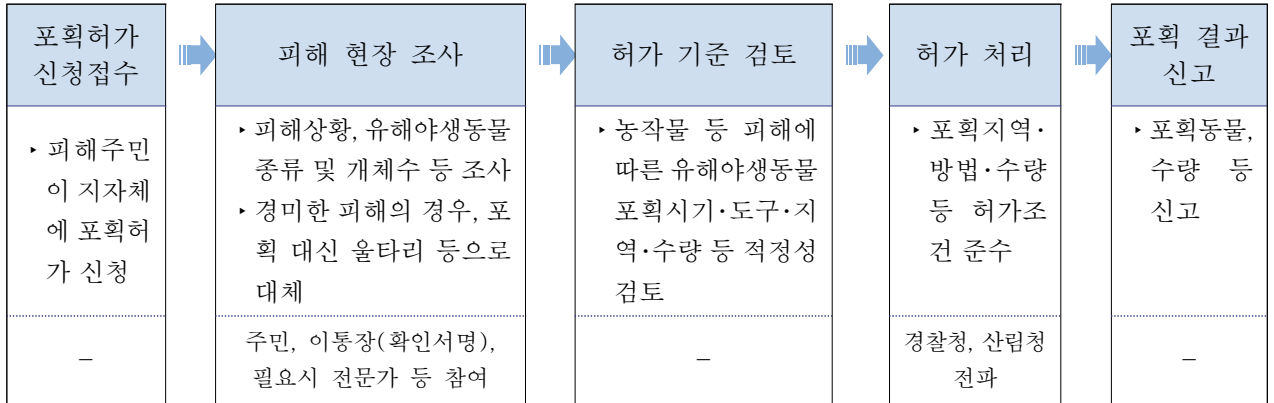
□ 유해야생동물 포획 목적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구제방안 마련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절차

-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가 기초 지자체의 장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가해동물명, 피해대상, 피해정도, 피해금액 등 기재) 제출
-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등을 조사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 외에 다른 피해 방지방법이 없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허가증 발급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방법

- (자력·대리포획)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 발생으로 포획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작물 등 피해상황, 동물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포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포획허가증 발급
- (포획단) 지자체는 포획대행 수렵인을 선발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가능(30명 원칙, 20명 이내 추가 가능, 4~11월-탄력적 조정 가능)
 - 모집공고로 선발하되, 수렵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5년 이내 포획실적이 있는 자, 5년 이내 「야생생물법」 위반 없는 자 우선 선발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 2019~2023년>

(단위: 마리)

연도	계	멧돼지	고라니	까치	평	오리류	청설모	기 타
2019	373,641	100,819	182,673	55,237	4,801	5,699	889	23,523
2020	404,776	91,475	215,133	57,385	5,982	4,541	455	29,805
2021	326,135	65,572	162,272	41,046	4,450	5,337	199	47,259
2022	300,339	70,375	153,527	32,280	4,304	3,146	210	36,497
2023	337,161	65,616	162,934	53,347	2,791	4,816	332	47,325

주: 전국 지자체 취합자료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야생생물 피해액

- 야생생물법령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 등 피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있음

<야생동물별 피해액: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연도	계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오리류	청설모	기 타
2019	13,746	8,910	2,158	1,279	297	47	140	915
2020	10,622	6,651	1,699	613	397	39	198	1,025
2021	9,349	5,629	1,452	814	306	25	341	782
2022	8,712	5,304	1,171	443	353	32	202	1,207
2023	9,582	6,539	1,170	397	343	21	509	603

주: 전국 지자체 취합자료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작물별 피해액: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연도	계	사과	배	포도	호두	벼	채소	기타
2019	13,746	2,020	971	200	55	1,817	2,490	6,193
2020	10,622	1,345	372	206	109	1,564	2,414	4,612
2021	9,349	1,724	361	136	84	1,119	1,868	4,057
2022	8,712	1,414	280	168	91	742	2,097	3,920
2023	9,582	1,798	316	118	90	725	1,300	5,235

주: 전국 지자체 취합자료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4] 민물가마우지 피해 현황 및 대책

(환경부 제출자료)

□ 피해 현황

-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주요 피해로는 내수면 어업(양식장, 낚시터 포함) 등 영업 피해와 집단번식에 따른 수목 고사(백화현상)가 있음.
- 특히 내수면 어업 피해는 어족자원 고갈, 어구(자망 등) 손상, 고급 어종(쏘가리 등)에 상처를 내는 등 상품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음
- 2023년도에 지자체를 통해 조사된 피해 발생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음

<민물가마우지 피해 발생지역: 2023년>

연번	시도	시군구	피해지역 (개소수)	피해지역 장소
계			58	
1	인천	강화군	1	삼산면
2	경기	남양주시	1	북한강 인근 족자섬
3	경기	평택시	1	평택호(안성천)~오성면 당거리
4	충북	청주시	10	한계리, 용곡, 중리, 이정골, 척산, 소로, 공북, 부연, 비상, 유호정
5	충북	충주시	1	충주댐 인근
6	충북	제천시	3	매곡저수지, 선고저수지, 청풍호일대
7	충북	옥천군	2	대청댐상류, 금강인근
8	충북	단양군	1	남한강일원
9	충남	아산시	2	아산호, 삼교호
10	충남	서천군	1	서부 저수지
11	충남	청양군	1	화성면 정자제
12	전북	익산시	2	용안면, 성당면
13	전북	김제시	2	백산저수지, 신평천 인근
14	전북	진안군	1	용담호 인근
15	전북	정읍시	3	원평천, 동진천, 정읍천 인근
16	경북	안동시	4	안동호, 임하호, 미천, 길안천
17	경북	예천군	2	신평리 1293-201 인근, 상주보 ~ 영풍교
18	경남	창원시	1	주남저수지(주남, 동판, 산남)
19	경남	산청군	3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

연번	시도	시군구	피해지역 (개소수)	피해지역 장소
20	강원	춘천시	3	홍천강, 청평호, 춘천호 일원
21	강원	원주시	3	섬강, 남한강 일원, 귀운저수지
22	강원	홍천군	2	홍천강 및 내춘천 전역
23	강원	횡성군	1	횡성호 일원
24	강원	영월군	1	남한강 일원
25	강원	평창군	1	평창강 일원
26	강원	정선군	1	정선 관내 소하천
27	강원	양구군	2	소양호, 파로호 일원
28	강원	인제군	2	소양호, 내린천 일원

주: 전국 지자체 취합자료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피해 방지 방안

-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포획 허용
 -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23.12.14.